

## NEWSLETTER

March 2022

자본시장 그룹  
Capital Markets Group

## CONTACT



변호사 오현주

T: 02.772.4690  
E: [hyunjoo.oh@leeko.com](mailto:hyunjoo.oh@leeko.com)

변호사 현승아

T: 02.772.4389  
E: [seunga.hyun@leeko.com](mailto:seunga.hyun@leeko.com)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자본시장 정책

2022. 3. 9.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 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기업과 투자자가 원하는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보호대책이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폐지 관리 체계 확대 및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불법 공모도 근절 등으로 전망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중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I. 주요 내용

개요	주요 내용	관련 법령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양도소득세 폐지</li> <li>■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양도소득세는 2023년 신설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 전면 시행의 일환임.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내용. 주식양도세 신설 대신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5%에서 0.15%로 낮아지고 주식양도차익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은 감소된다는 설명</li> <li>■ 당초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소득세 도입 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의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이후 주식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 및 증권거래세의 적정 수준 유지로 공약 변경</li> </ul> </li> </ul>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li> <li>■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li> <li>■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 청약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li> </u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 지속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및 단계 세분화(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 이관 등) 추진</li> </u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자들의 장내 대량 매도로 인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기간과 한도 제한</li> <li>■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 변동 시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 재검토</li> </u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불법 공모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공모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모도 엄정 처벌</li> <li>■ 기관 및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합리적 조정</li> <li>■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검토</li> </u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 및 제재 실효성 강화</li> </u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윤석열 당선인의 이러한 자본시장 정책들과 비교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에서는 대주주 등 경영진의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사경 대폭 확대와, 주가조작 근절, 스튜어디스 코드 강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을 강조한 점에서 대조됩니다.

## II. 시사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유례없는 활황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모회사의 주력 사업분야 분할 및 분할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소액주주의 기회 손실 논란 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기간 중 논란이 된 이슈를 필두로 하여 당선인이 표방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인 과제들이 선별 실행되었지만,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문제와 대통령령이나 한국거래소 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의 개정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구분지어, 후자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 및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개편 수위 결정의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자본시장그룹은 향후에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법, 관련규정, 시행세칙 등 법령의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사무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우 04532)

판교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3층 (우 13529)

Tel : 02-772-4000 | Fax : 02-772-4001/2 | E-mail : mail@leeko.com | www.leeko.com